

2025.05.01

근로자의 날

한림대학교 인권센터

아직도
5월 1일에
일하나요?

근로자의 날, 제대로 알고 쉬자!

#노동 존중 #실 권리 #근로자의 날

한림대학교 인권서포터즈 3기

근로자의 날은 왜 생겼을까?

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'8시간 노동' 투쟁에서 시작됐어요.

한국은 1994년부터 '근로자의 날'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죠.

공휴일은 아니지만, 노동의 권리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에요.



2025.05.01

근로자의 날

한림대학교 인권센터

근로기준법 제2조
고용노동부 「근로자의 날 Q&A」

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!

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단시간 노동자 등 모두 포함됩니다.

하지만 공무원, 공공기관 상근자 등 일부는 해당되지 않아요.



“그런데 저 ... 오늘도 일해요”

알바는 해당 안 되지 않나요?



“말 안 해줘서 몰랐어요.”

몰라서 못 쉬고,

말 못 해서 못 쉬는 현실...

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!

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!

Q.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?

A. 휴일수당 100% 추가 지급!

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!

계약서에 '근로자의 날 제외' 항목은 무효예요!

예) 시급 10,030원 근로자의 날 출근 시

시급 20,060원 지급해야 해요.

인권의 관점에서 '쉼'

쉬는 건 특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.

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활동,
그 존엄은 '실 권리' 에서 시작됩니다.

쉼 없는 노동은
'인권침해' 일 수 있습니다.

2025.05.01

근로자의 날

한림대학교 인권센터

근로자의 날은 권리의 날입니다.

알지 못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.

5월 1일

우리 함께 쉼 권리를 외쳐요!

출처 및 참고 자료

근로자의 날 유래 | 고용노동부, ILO

적용 대상 | 근로기준법 제2조

휴일수당 규정 | 근로기준법 제55조, 제57조

계약서 무효 조항 | 고용노동부 유권해석

현실 사례 | 청년유니온 실태조사, 언론 사례 (경향·한겨레)

인권적 관점 | 국가인권위 보고서, ILO

이미지 출처 | pixabay